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도로명주소법 시행(2011.8.4.)에 따른 보건소, 사업소, 출장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
- 권역별 도서관을 총괄하는 센터개념의 구미시립도서관 명칭을 변경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업소 명칭변경(안 제19조)
 - 구미시립도서관 → 구미시립중앙도서관
- 보건소, 사업소, 출장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 표기
(안 별표1, 별표2, 별표3)
- 관계법령의 정비(안 제13조, 제20조, 제23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의2 및 제19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시 산하 행정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2013년 1월부터 전격시행 예정인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대응하고, 형곡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을 권역별 도서관을 총괄하는 개념의 도서관인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제19조 제5호에 ‘구미시립도서관’을 ‘구미시립중앙도서관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타 도서관의 총괄센터기능으로 하고, 관장사무에 선산분관, 인동분관을 삭제 하였으며, 작은도서관, 자료실 및 열람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,
- 직속기관,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대비코자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구미시립도서관 명칭은 개관 당시 1개소이던 도서관이 5개소로 확대 운영되면서 총괄하는 개념의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다른 도서관을 통합 관리·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, 행정기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